

고성군이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5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3.20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이장은 최하 행정기관(청)으로서,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수(수당)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, 특히 업무상의 사망 및 상해 등에 대하여 보상방안이 없는 실정으로,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이·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무수행 중의 사건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고성군 공고 제2006-108호(2006. 02. 14. ~ 2006. 03. 06.)
- 의견 제출사항 없음

나. 관계법령 및 근거

- 제24차 경상남도 시장·군수협의회 『리·통장 단체상해보험』 제도 시행 계획 안건 의결사항(2005.12. 2)
- 경상남도 행정과-14624(2005.12.28)호

4. 분 문

- 덧붙임과 같음

고성군이장업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이장의업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고성군이장의업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”를 “고성군 이장의 업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6조(사기진작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사기진작) ①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②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③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, 체육대회,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명: <u>고성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 관한조례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명: <u>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6조(사기진작) ①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</p> <p>③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, 체육대회,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.</p>